# 해양경찰청 전문경력관 가군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해양경찰청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 2024년 2월 19일 해양경찰청장

### 임용예정인원 (1개 직위, 총 8명)

			선발예정	인원(8명)				
지원코드	임용예정직급	S-92	흰수리 (KUH-1)	AS-565	AW-139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헬기	전문경력관 가군	2	4	1	1	정년적용	지방청 항공단(대)	

<sup>※</sup> 하나의 기종에만 지원 가능(다른 기종 중복 지원불가)

## 2 임용예정직무

지원코드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헬기	헬기조종	전문경력관 가군	<ul> <li>해양경찰청 보유 헬리콥터의 기장으로 주·야간 해상 인명구조, 응급환자 이송</li> <li>원거리 해상치안 대응을 위한 대형함정 탑재(주야간 이착함)</li> <li>해양경찰청 헬리콥터 운항관리 및 교육훈련 교관 임무 등</li> </ul>

<sup>※</sup>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전문경력관 규정,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

####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18세 이상(2006.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4.4.25.)]

• 경력계산, 자격증 등의 유효여부는 최종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채용분야	직위별 요건						
세중군약	※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헬기조종 (S-92)	응시요건 <자격증>	○ 「항공안전법」제35조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육상다발 자격증 (헬리콥터에 한함)을 소지한 사람 ○ 「항공안전법」제44조에 따른 계기비행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 「항공안전법」제40조에 의한 항공신체검사 제1종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 ○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헬리콥터 조종시간 총 2,500시간 이상(다발 헬리콥터 조종 1,000시간 포함)을 보유한 사람 ○ S-92 기장 이상 경력 보유자 ※ 최근 3년 이내 헬리콥터 조종경력 반드시 포함 ※ 조종사 자격 취득 전 비행시간 포함, 모의 비행시간 제외(비행시간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					

헬기조종 (KUH-1)	응시요건 <자격증>	○「항공안전법」제35조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육상다발 자격증 (헬리콥터에 한함)을 소지한 사람 ○「항공안전법」제44조에 따른 계기비행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항공안전법」제40조에 의한 항공신체검사 제1종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 ○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헬리콥터 조종시간 총 2,500시간 이상(다발 헬리콥터 조종 1,000시간 포함)을 보유한 사람 ○ KUH-1 기장 이상 경력 보유자 ※ 최근 3년 이내 헬리콥터 조종경력 반드시 포함
		※ 조종사 자격 취득 전 비행시간 포함, 모의 비행시간 제외(비행시간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
헬기조종 응시요건 (AS-565) <자격증>		○「항공안전법」제35조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육상다발 자격증 (헬리콥터에 한함)을 소지한 사람 ○「항공안전법」제44조에 따른 계기비행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항공안전법」제40조에 의한 항공신체검사 제1종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 ○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헬리콥터 조종시간 총 2,500시간 이상(다발 헬리콥터 조종 1,000시간 포함)을 보유한 사람 ○ AS-565 기장 이상 경력 보유자 ※ 최근 3년 이내 헬리콥터 조종경력 반드시 포함 ※ 조종사 자격 취득 전 비행시간 포함, 모의 비행시간 제외(비행시간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
헬기조종 (AW-139)	응시요건 <자격증>	○ 「항공안전법」제35조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육상다발 자격증 (헬리콥터에 한함)을 소지한 사람 ○ 「항공안전법」제44조에 따른 계기비행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 「항공안전법」제40조에 의한 항공신체검사 제1종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 ○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헬리콥터 조종시간 총 2,500시간 이상(다발 헬리콥터 조종 1,000시간 포함)을 보유한 사람 ○ AW-139 기장 이상 경력 보유자 ※ 최근 3년 이내 헬리콥터 조종경력 반드시 포함 ※ 조종사 자격취득 전 비행시간 포함, 모의 비행시간 제외(비행시간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

# 5 시험 방법

#### 가. 실기시험

지려	직류	직급	채용분야	평가방법		
712	477			1차	2차	
항공	조종	전문경력관 가군	헬기조종	▶ 운항조종능력(모의조종) ▶ 항공실무지식(구술)	▶ 운항조종능력(실비행) * 1차 시험 합격자 限	

- 1차 합격자: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예정인원의 200% 범위 內 선발 ※ 단,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채용예정인원의 300% 범위 내 선발
- 2차 합격자: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예정인원의 150% 범위 內 선발 ※ 단,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채용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

#### 나,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다.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하며,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① 소통·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 헌신·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③ 창의·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 윤리·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⑤ 해양경찰 인재상 적합 여부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6 시험 일정

	시험공고	실기시험		서류전형		최종합격자
구분	(원서접수)	1차 모의조종 (합격자 발표)	2차 실비행 (합격자 발표)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발표
일정	'24. 2. 19(월) (2.20(화)~29(목))	'24. 3. 13.(수) ~ 3. 15.(금) ('24.3.18.(월))	'24. 3. 26.(화) ~ 3. 29.(금) ('24.4.2.(화))	'24. 4. 18.(목) (불합격자 개별 통보)	'24. 4. 25.(목)	'24. 5. 10.(금) 17:00경
장소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별도	공지	인천	인천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해양결정 활제이지 등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등 변경될 수 있음
- 시험별 장소 및 합격자 명단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 고시센터에 게재 예정
  - ※ 서류전형의 합격자 발표는 별도 게재하지 않으며 불합격자 대상 개별 통보 예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7 용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기간 및 시간: 2024. 2. 20(화) 10:00 ~ 2. 29.(목) 17:00(기간 중 24시간 접수) ※ 응시표는 2024. 3. 4.(월) 17:00부터 출력 가능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s://www.gosi.kr)에 접속, 안내에 따라 접수
  - ※ 응시원서 제출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 PNG)이 필요하며 제출기간 종료 후 변경 불가
  - ※ 응시수수료(전문경력관 7,000원) 및 전자결제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 발생
  - ※ 응시원서 제출 당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우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를 제출한 날 기준으로「민법」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응시수수료는 반환됩니다. ※ 면제대상 판단을 위한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방법·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응시원서 제출시 안내 예정

#### 나. 제출서류(원서접수 시 제출서류 없음)

• 실기시험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 제출서류는 별도 공지 예정

####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원서접수 시 응시자격 및 경력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 시 추가(보완) 서류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기한 내 모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험응시 불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귀책사유는 응시자에게 있음. 제출서류의 입증책임은 응시자에게 있고 확인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 불가
-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여부를 관련 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시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에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처리비용을 제외한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4. 5. 10. ~ 6. 9.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8 교육 및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교육 입교일 : 2024년 6월 1일(예정) \*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임용 예정일 : 신원조사 및 신체검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소정의 교육 이수 후 임용
- 채용기간 : 「국가공무원법」제74조에 따른 정년 적용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 9 안내 및 참고사항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표와 신분증 원본(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주민등록번호확인이 가능해야함))을 소지하여야하며 응시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는 시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열거한 신분증 外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해양경찰청에서 공지한 시간에 늦게 도착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집결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시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응시원서 접수 시 공고문 기재사항을 모두 숙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채용시험 전형 중 전(前)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수 없습니다. 또한, 종목이 나누어진 실기시험은 전(前) 단계 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의 시험에도 응시할수 없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 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 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시험 일정 및 정보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채용정보』 또는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s://gosi.go.kr)에 게재 예정이며, 응시자는 시험 시간, 장소, 준비물 등 공지사항의 내용을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인터넷 원서접 수사이트에 접속하여 갱신되는 공지사항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훈련담당관: 032-835-2436, 2636, 2736

# 응시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등 관련 법령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 · 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 · 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 【「공무원임용시험령」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붙임 2

#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코드번호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헬기	헬리콥터 조종(S-92)	전문경력관 가군	2명	지방청 항공단(대)
주요 업무	○ 주·야간 해상 순찰, 수색구조·응급환자 이송, 해상 대형특수 재난에 대통수 이송 특수구조대원 출동 이송 ○ 해상치안 대응을 위한 대형함정 탑재(이·착함) 및 통합방위·대테러 ○ 해경청 헬리콥터 운항관리 및 교육훈련 교관 임무 등 ○ 시험비행 및 기술 유지 비행 ○ 필요시, 해경청 사정에 따라 타 기종 비행 ○ 그 밖에 헬리콥터 운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필요 역량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국가관(애국심, 민주성, 다양성), 공직관(책임감, 투명성, 공정성), 윤리관(청렴성, 도덕성, 공익성) ○ (직급별 역량) 비행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기술적 전문지식, 전략적 사고력, 논리적 사고			
필요 지식	○ 항공안전관리 ○ 해경청 헬리 ○ 항공기상 및	는전 및 헬기운용 관련 리, 잠재위험 관리, 연  콥터의 특수성 및 현 ! 항공 교통 관제 지 ! 이론 및 실무에 대	안전 증진 등 항공/ 해외 사례 분석에 됩  식	사고 방지에 관한 지식 필요한 지식

####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다음 응시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 응 시 자 격 요 건

- ○「항공안전법」제35조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육상다발 자격증(헬리콥터에 한함)을 소지한 사람
- ○「항공안전법」제44조에 따른 계기비행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 ○「항공안전법」제40조에 의한 항공신체검사 제1종 자격증명을 소지 한 사람
-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을소지한 사람
- 헬리콥터 조종경력이 총 2,500시간 이상(다발 헬리콥터 조종 1,000 시간 포함) 보유한 사람(모의비행시간은 비행시간에서 제외)
- % 총 비행시간을 말함.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 취득 전 비행시간 포함
- % 비행시간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77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
- 해양경찰 보유 헬리콥터와 동일 기종(S-92) 기장 이상 경력 보유자
- 최근 3년 이내 헬리콥터 조종 경력자

우대요건

응시요건 <자격증>

없음

※ "필수자격요건(자격증)"과 "응시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각각 충족하여야 함

그트비송	+110 H01	이오세터디그	니바네다이이	
코드번호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헬기 	헬리콥터 조종(KUH-1)	전문경력관 가군	4명	지방청 항공단(대)
주요 업무	특수구조대원 ○ 해상치안 다 ○ 해경청 헬리 ○ 시험비행 및 ○ 필요시, 해경	<sup>일</sup> 출동 이송	탑재(이·착함) 및 교육훈련 교관 임무 기종 비행	
필요 역량	윤리관(청렴 <b>) (직급별 역량</b>	성, 도덕성, 공익성)	<sup>벽,</sup> 기획력·팀워크지형	책임감, 투명성, 공정성), 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논리적 사고
필요 지식	○ 항공안전관리 ○ 해경청 헬리 ○ 항공기상 및	전 및 헬기운용 관련 리, 잠재위험 관리, 연 콥터의 특수성 및 연 ! 항공 교통 관제 지 ! 이론 및 실무에 대	안전 증진 등 항공/ 해외 사례 분석에 됩  식	사고 방지에 관한 지식 필요한 지식

	※ 복수국적자는 당히	지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다음 응시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응 시 자 격	자격증(헬리콥터에 한함)을 ○「항공안전법」제44조에 따른 ○「항공안전법」제40조에 의한 한 사람 ○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지 자격증을소지한 사람 ○ 헬리콥터 조종경력이 총 2,50 시간 포함) 보유한 사람(모의 ※ 총 비행시간을 말함. 운송용 또는 ※ 비행시간은「항공안전법 시행규 ○ 해양경찰 보유 헬리콥터와 동안	○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요 건		○ 헬리콥터 조종경력이 총 2,500시간 이상(다발 헬리콥터 조종 1,000 시간 포함) 보유한 사람(모의비행시간은 비행시간에서 제외) ※ 총 비행시간을 말함.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 취득 전 비행시간 포함			
		※ 비행시간은「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77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 ○ 해양경찰 보유 헬리콥터와 동일 기종(KUH-1) 기장 이상 경력 보유자 ○ 최근 3년 이내 헬리콥터 조종 경력자			
	우대요건	없음			
* "	※ "필수자격요건(자격증)"과 "응시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각각 충족하여야 함				

행기 헬리콥터 조종(AS-565) 전문경력관 가군 1명 지방청 항공단(대)  ******  ***************************							
구요 업무  ○ 주야간 해상 순찰, 수색구조응급환자 이송, 해상 대형특수 재난에 대응하는 특수구조대원 출동 이송 ○ 해상치한 대응을 위한 대형함정 탑재(아착함) 및 통합방위대테러 작전 ○ 해경청 헬리콥터 운항관리 및 교육훈련 교관 임무 등 ○ 시험비행 및 기술 유지 비행 ○ 필요시, 해경청 사정에 따라 타 기종 비행 ○ 고 밖에 헬리콥터 운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공통 역량) 국가관(애국심, 민주성, 다양성), 공직관(책임감, 투명성, 공정성), 윤리관(청렴성, 도덕성, 공익성) ○ (지급별 역량) 기술적 전문지식, 전략적 사고력, 논리적 사고  ○ 해상 항공안전 및 헬기운용 관련 기술 ○ 항공안전관리, 잠재위험 관리, 안전 증진 등 항공사고 방지에 관한 지식 ○ 항공가상 및 항공 교통 관제 지식 ○ 항공가 관련 이론 및 실무에 대한 지식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입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다음 응시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 「항공안전법」제35조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육상다발 자격증(헬리콥터에 한함)을 소지한 사람 ○ 「항공안전법」제44조에 따른 계기비행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 「항공안전법」제44조에 따르 계기비행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 「항공안전법」제44조에 마르 계기비행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 「항공안전법」제44조에 의한 항공신체검사 제1종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 ○ 「항공안전법」제44조에 마르 계기비행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 「항공안전법」제44조에 마르 계기비행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 ○ 「항공안전법」제44조에 마르 계기비행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 ○ 핵리콥터 조종경력이 총 2,500시간 이상(다발 헬리콥터 조종 1,000시간 포함) 보유한 사람(모의비행시간은 비행시간에서 제외) ※ 총 비행시간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77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 이해당경찰 보유 헬리콥터와 동일 기종(A5-565) 기장 이상 경력 보유자 회급 3년 이내 헬리콥터 조종 경력자	코	드번호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목수구조대원 출동 이송 ○ 해상치안 대응을 위한 대형함정 탑재(아착함) 및 통합방위대테리 작전 ○ 해경청 헬리콥터 운항관리 및 교육훈련 교관 임무 등 ○ 시험비행 및 기술 유지 비행 ○ 크 밖에 헬리콥터 운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공통 역량) 국가관(애국심, 민주성, 다양성), 공직관(책임감, 투명성, 공정성), 윤리관(청렴성, 도덕성, 공익성) ○ (직급별 역량) 비행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직별별 역량) 비행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직별별 역량) 기술적 전문지식, 전략적 사고력, 논리적 사고  □ 해상 항공안전 및 헬기운용 관련 기술 ○ 항공안전관리, 장재위험 관리, 안전 증진 등 항공사고 방지에 관한 지식 ○ 항공기상 및 항공 교통 관제 지식 ○ 항공기상 및 항공 교통 관제 지식 ○ 항공기 관련 이론 및 실무에 대한 지식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다음 응시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35조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육상다발 자격증(헬리콥터에 한함)을 소지한 사람 ○ 「항공안전법」,제45조에 따른 계기비행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 「항공안전법」,제44조에 따른 계기비행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 「항공안전법」,제44조에 따른 계기비행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항공인전법」,제44조에 따른 계기비행 자격증명을 보은 사람이 항공인전법」,제40조에 의한 항공신체검사 제1종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 ○ 헬리콥터 조종경력이 충 2,500시간 이상(다발 헬리콥터 조종 1,000시간 포함, 보유한 사람(모의비행시간은 비행시간에서 제외) ※ 총 비행시간을 말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 취득 전 비행시간 포함 ※ 비행시간을 말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 취득 전 비행시간 포함 ※ 비행시간을 말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 취득 전 비행시간 포함 ※ 비행시간을 말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 취득 전 비행시간 포함 ※ 비행시간을 말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 취득 전 비행시간 포함 ※ 비행시간을 말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 취득 전 비행시간 포함 ※ 비행시간을 말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 취득 전 비행시간 포함 ※ 비행시간을 당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 취득 전 비행시간 포함 ※ 비행시간을 당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 취득 전 비행시간 포함 ※ 비행시간을 당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 취득 전 비행시간 포함 ※ 비행시간을 당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 취득 전 비행시간 포함		헬기	헬리콥터 조종(AS	S-565)	전문경력관 가군	1명	지방청 항공단(대)
응기 역량		주요 업무	특수구 해상치 해경청 시험 <sup>L</sup> 필요시	<sup>1</sup> 조대원 기안 디 당 헬리 기행 및 기, 해경	원 출동 이송 H응을 위한 대형함정 I콥터 운항관리 및 ! 기술 유지 비행 명청 사정에 따라 타	성 탑재(이·착함) 및 교육훈련 교관 임무 기종 비행	통합방위·대테러 작전 · 등
필요 지식  ○ 항공안전관리, 잠재위험 관리, 안전 증진 등 항공사고 방지에 관한 지식 ○ 해경청 헬리콥터의 특수성 및 해외 사례 분석에 필요한 지식 ○ 항공기상 및 항공 교통 관제 지식 ○ 항공기 관련 이론 및 실무에 대한 지식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다음 응시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 「항공안전법」제35조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육상다발 자격증(헬리콥터에 한함)을 소지한 사람 ○ 「항공안전법」제44조에 따른 계기비행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 「항공안전법」제40조에 의한 항공신체검사 제1종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 ○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을소지한 사람 ○ 헬리콥터 조종경력이 총 2,500시간 이상(다발 헬리콥터 조종 1,000시간 포함) 보유한 사람(모의비행시간은 비행시간에서 제외) ※ 총 비행시간을 말함.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 취득 전 비행시간 포함 ※ 비행시간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77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 ○ 해양경찰 보유 헬리콥터와 동일 기종(AS-565) 기장 이상 경력 보유자 ○ 최근 3년 이내 헬리콥터 조종 경력자	필요 역량 ( <b>직급별</b>				념성, 도덕성, 공익성) <b>)</b> 비행상황인식 판단	력, 기획력·팀워크지형	s, 의사소 <del>통</del> 능력·조정능력
※ 다음 응시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 「항공안전법」제35조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육상다발 자격증(헬리콥터에 한함)을 소지한 사람 ○ 「항공안전법」제44조에 따른 계기비행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 「항공안전법」제40조에 의한 항공신체검사 제1종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 ○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을소지한 사람 ○ 헬리콥터 조종경력이 총 2,500시간 이상(다발 헬리콥터 조종 1,000시간 포함) 보유한 사람(모의비행시간은 비행시간에서 제외) ※ 총 비행시간을 말함.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 취득 전 비행시간 포함 ※ 비행시간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77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 ○ 해양경찰 보유 헬리콥터와 동일 기종(AS-565) 기장 이상 경력 보유자 ○ 최근 3년 이내 헬리콥터 조종 경력자	필요 지식 이 형			반전관i 형 헬리 기상 및	리, 잠재위험 관리, (  콥터의 특수성 및 i ! 항공 교통 관제 지	안전 증진 등 항공/ 해외 사례 분석에 [  식	
응시요건		※ 복수국	적자는 당해 직	무분0	i에 임용이 제한되 <u></u>	므로 임용 전까지 <b>오</b>	<b>리국국적을 포기해야 함</b>
자격증(헬리콥터에 한함)을 소지한 사람  「항공안전법」제44조에 따른 계기비행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항공안전법」제40조에 의한 항공신체검사 제1종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자격증을소지한 사람 헬리콥터 조종경력이 총 2,500시간 이상(다발 헬리콥터 조종 1,000시간 포함) 보유한 사람(모의비행시간은 비행시간에서 제외) ※ 총 비행시간을 말함.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 취득 전 비행시간 포함 ※ 비행시간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77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이 해양경찰 보유 헬리콥터와 동일 기종(AS-565) 기장 이상 경력 보유자의 최근 3년 이내 헬리콥터 조종 경력자		※ 다음 용	응시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응시 기	가능	
※ 비행시간은「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77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      해양경찰 보유 헬리콥터와 동일 기종(AS-565) 기장 이상 경력 보유자      최근 3년 이내 헬리콥터 조종 경력자	시 자 격 요	○ 「항공 자격 ○ 「항공 ○ 「항공 한 시 ○ 전파 장시요건 <자격증> ○ 헬리롭 시간		증(헬리콥터에 한힘 안전법」제44조에 의 안전법」제40조에 의 사람 전자통신기사, 전파 증을소지한 사람 급터 조종경력이 총 포함) 보유한 사람(	)을 소지한 사람 따른 계기비행 자격 비한 항공신체검사 전자통신산업기사 2,500시간 이상(다음 모의비행시간은 비	격증명을 받은 사람 제1종 자격증명을 소지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발 헬리콥터 조종 1,000 행시간에서 제외)	
9대0거 어오			<b>*</b>	비행/ 해양경	니간은「항공안전법 시 성찰 보유 헬리콥터외	- · - · · · · 행규칙」제77조에 따 · 동일 기종(AS-565)	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
·····································		우대요?	건 없는	음			

※ "필수자격요건(자격증)"과 "응시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각각 충족하여야 함

코	L드번호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헬기	헬리콥터 조종(AW-139)	전문경력관 가군	1명	지방청 항공단(대)	
<ul> <li>○ 주·야간 해상 순찰, 수색구조·응급환자 이송, 해상 대형특수 재난에 대용특수구조대원 출동 이송</li> <li>○ 해상치안 대응을 위한 대형함정 탑재(이·착함) 및 통합방위·대테러 적이 해경청 헬리콥터 운항관리 및 교육훈련 교관 임무 등</li> <li>○ 시험비행 및 기술 유지 비행</li> <li>○ 필요시, 해경청 사정에 따라 타 기종 비행</li> <li>○ 그 밖에 헬리콥터 운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li> </ul>					통합방위·대테러 작전 등	
필요 역량  의 역량 (공통 역량) 국가관(애국심, 민준리관(청렴성, 도덕성, 공약 (지급별 역량) 비행상황인식·판 (지렬별 역량) 기술적 전문자				력, 기획력·팀워크지형	s,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필요 지식	○ 항공안전관 ○ 해경청 헬리 ○ 항공기상 및	H상 항공안전 및 헬기운용 관련 기술 상공안전관리, 잠재위험 관리, 안전 증진 등 항공사고 방지에 관한 지식 H경청 헬리콥터의 특수성 및 해외 사례 분석에 필요한 지식 상공기상 및 항공 교통 관제 지식 상공기 관련 이론 및 실무에 대한 지식			
	※ 보스구	전자느 단해 지므부(	):에 인용이 제하디므	그로 인용 저까지 오		
		응시 자격요건에 모두			17772 471117 6	
응 시 자 격		○ 「항공 자격 ○ 「항공 ○ 「항공 한 / ○ 전파	당안전법」제35조에 의  증(헬리콥터에 한함 당안전법」제44조에 [ 당안전법」제40조에 의 사람	의한 운송용 또는 시)을 소지한 사람 다른 계기비행 자격 나한 항공신체검사	나업용 조종사 육상다발 격증명을 받은 사람 제1종 자격증명을 소지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요 건 건		· 격증>	· 포함) 보유한 사람(  행시간을 말함. 운송용 ! 시간은 「항공안전법 시	이 총 2,500시간 이상(다발 헬리콥터 조종 1,00 사람(모의비행시간은 비행시간에서 제외)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 취득 전 비행시간 포함 헌법 시행규칙」제77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한 료터와 동일 기종(AW-139) 기장 이상 경력 보유기 콥터 조종 경력자		
	우대요?	건 없음	없음			

※ "필수자격요건(자격증)"과 "응시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각각 충족하여야 함

# 붙임 3 실기시험 평가방법 및 기준

# 헬기조종(전문경력관 기군) 1차 실기시험 평기표

○전문경력관 가군 헬기조종 1차 기능실기 평가방법

평가방법	분야	계급	주요업무	평가사항
1차 기능실기 *구술포함	헬기조종	전문 경력관 가군	▶ 항공 순찰 ▶ 항공 수색 및 구조 ▶ 주·야간 함상 이·착함	▶ 기본 비행술 ▶ 야간 함상 이·착함 절차 ▶ 계기비행 절차 ▶ 항공실무능력

평 가 내 용		Ŀ	배 점	기 준		E 7J
		우수	양호	보통	불량	득 점
항공기 함정 이동 (제자리비행, 수평이동) (10점)	함정 Hover(5점)	±5´	±10′	±15′	±20′	
	* 10ft 유지	 5점	4점	3점	2점	
	Side-Slip(5점) * 함정 좌현이동	0	±5°	±10°	±15°	
		5점	4점	3점	2점	
	증속·상승(15점)	±50	±100	±150	±200	
야간 함정	* 침로 30° off, 500fpm 상승	15점	12점	9점	6점	
이함 요령 (25점)	선회·수평비행(10점)	±5′	±10′	±15′	±2′	
(25倍)	* 60kts시 함정침로 선회, 400ft, 100kts시 좌선회	10점	8점	6점	4점	
	증·감속(2.5점)	±0'	±50'	±100′	±150′	
기본비행	* 400ft, 100kts 기준	2.5점	2점	1.5점	1점	
(5점)	상승·강하·선회(2.5점)	±2.5°	±5°	±10°	±20°	
	* 500fpm	2.5점	2점	1.5점	1점	
ᅡᆉ	강하률(15점)	±50	±100	±150	±200	
야간 함정   착함 요령	* 1.2nm, 400ft, 60kts 기준, 0.5nm까지 300fpm 접근	15점	12점	9점	6점	
(25점)	동조기동 및	±2.5′	±5′	±10′	±15′	
	함정 착함(10점)	10점	8점	6점	4점	
계기비행 (15점)	계기 진입(10점)	±0°/±100	±5°/±200	±10°/±300		
	* 경로/상승·강하률	10점	8점	6점	4점	
	계기 전환(5점)	±0′/±5	±50′/±10	±100′/±20	±150′/±30	
	* 속도/경로 유지	5점	4점	3점	2점	
항공실무능력(20점)		항공상식 및 운항관련 실무지식				
		20점	16점	12점	8점	
	득 점 계	100 점				점

<sup>※</sup> 항공기 해상 착수 및 착함 실패시 실격

# 헬기조종(전문경력관 기군) 2차 실기시험 평가표

## ○전문경력관 가군 헬기조종 2차 기능실기 평가방법

평가방법	분야	계급	주요업무	평가사항
2차 기능실기	헬기조종	전문 경력관 가군	▶ 항공 순찰 ▶ 항공 수색 및 구조 ▶ 주·야간 함상 이·착함	▶ 기본 비행술 ▶ 해상 구조능력 ▶ 해상 비행능력 ▶ 항공 안전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항 목	배 점 기 준			드 저	
		세 구 3 1 % <del>=</del> 	우수	양호	보통	불량	득 점
	계기단비해	7 F 071(10 <del>4)</del>	±1	±2	±3	±4	
	제자리비행 수평이동 (10점)	고도 유지(10ft)	5점	4점	3점	2점	
		人間() F(C:do Clin) Hooding O7	±2	±4	±6	±8	
		수평이동(Side-Slip)·Heading 유지	5점	4점	3점	2점	
		경사각·고도 유지(15°, 1000ft)	±1/100	±2/150	±3/200	±4/250	
기본			5점	4점	3점	2점	
비행		정속 상승·강하(80kts)	±5	±10	±15	±20	
	장주비행		5점	4점	3점	2점	
	(20점)	상승·강하율 유지(500fpm)	±100	±150	±200	±250	
			5점	4점	3점	2점	
		속도유지(100kts)	±5	±10	±15	±20	
			5점	4점	3점	2점	
	모의 해상	고도 유지(200ft, 3분내외)	±5	±10	±15	±20	
해상			5점	4점	3점	1점	
임무	인명 구조	고도 유지(100ft, 3분내외)	±5	±10	±15	±20	
			10점	8점	6점	4점	
비행	(30점)	위치 유지(Hoist 화면 기준)	1/4이내	1/2이내	3/4이내	. –	
			15점	12점	9점	6점	
	공중	20kts이상 증·감속시 고도유지 ±500fpm이상 상승·강하시 속도유지	±100	±200	±300	±400	
<b></b>	<b>조작</b> (30점) (자세안정 장치해제)		IU심	8점	6점	4점	
해상			±5	±10	±15	±20	
비행			10점	8점	6점	4점	
		경사각(15°) 유지	±2	±4	±6	±8	•
			10점	8점	6점	4점	
		<b>안전(CRM) (10점)</b> , 상황판단 및 인식 등					
	총 합계 점						
평가	평가위원 의견						